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. 6. 4 선고 2019가단676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

피 고 안성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택

담당변호사 이중산

변론 종결 2020. 4. 2

판결 선고 2020. 6. 4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4,118,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3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피고가 1970년대부터 원고 소유인 안성시 B 답 3534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C저수지 또는 그 제방 부지로 편입하여 사용·수익하고 있는 사실, 원고가 구하는 2014. 11. 1.부터 2020. 3. 6.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 합계 34,118,6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,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임료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34,118,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. 3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주민들의 요구로 C저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신